

학생상담센터규정

제 정 1999. 3.

개 정 2012. 7.

개 정 2020. 4.

개 정 2023. 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기구는 우송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본교 내에 둔다.(신설 2020.04.13.)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설치된 센터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4.13.)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04.13.)

1.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진로개발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2.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 및 심리평가
3. 위기 대응 상담 및 관련 매뉴얼 개발
4. 학생들의 자아성장, 인성개발 및 진로관련 프로그램 개발
5. 학사정책 수립을 위한 학생의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6. 양성평등성상담실 운영
7. 그 밖의 대학생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대·내외 사업 등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센터는 센터장, 부센터장, 상담교수, 전문 상담원, 행정조교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04.13.)

제5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0.04.13.)

②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 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전임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07.07)

제3장 운영위원회 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개정 2020.04.13.)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센터장, 부위원장은 부센터장

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상담관련 전공교수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개정 2020.04.13.)

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04.1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4.13.)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중요안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